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설명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5. 31.(월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	• 과장 김광림, 사무관 이동훈, 주무관 김태균 • ☎ (044) 201-3545, 3543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	

등록말소를 결정한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

< 관련 보도내용(e대한경제, '21.5.29) >

◆ 이렇지도 저렇지도...오락가락하는 부실 소형 타워크레인 관리정책

-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등록말소를 결정한 타워크레인 3개 기종 120대* 전체에 대해 5월 31일(월)부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시행한다.

* CCTL130-L43A(90대), CCTL140-43A(11대), FT-140L(19대)

- 이번 점검은 등록말소가 결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등록말소 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이 많은 상황*에서 조속히 행정처분을 이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.

* 전체 120대 장비 중 24대가 등록말소 완료('21.5.26. 기준)

- 국토교통부는 작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및 사고조사 결과 러핑 와이어로프 및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120대에 대해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(이하 "심평위")를 거쳐 올해 2월 등록말소를 결정한 바 있다.

○ 그러나 타워크레인 등록권자인 지자체가 등록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대상 장비와 관련된 사고*가 발생(인명피해 없음)하여 이번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.

*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파단 (인천 부평, 5.8), 타워크레인 지브 꺾임(속초, 5.25)

○ 국토교통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는 등록말소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독려하고, 건설사에는 등록말소 대상 장비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며, 등록말소가 되었으나 철거되지 않고 사용 중인 장비는 고발* 조치하도록 지도·감독할 계획이다.

*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)

□ 한편,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은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형식승인을 다시 받은 경우 재등록 가능하나, 지난 4월 16일 심평위 심의결과 이번 등록말소 대상 장비의 재형식승인 신청을 반려*하고, 사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T/F를 구성하기로 하였다.

* (반려사유) 형식도면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며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 필요

○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작사, 검사대행자,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/F를 구성(5.24)하였고, 이후 보완 제출된 형식승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, 형식도서의 보완만으로는 장비의 실질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 심평위에서도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, T/F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판단이 보류된 만큼 안전성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등록말소를 유지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동훈 사무관(☎ 044-201-354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